

제411회 임시회
'23. 9. 8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8월 28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사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도내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의 요청을 검토해 응급의료시행계획, 응급의료위원회,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(안 제3조)
-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수정함 (안 제4조)
-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(안 제6조)
 - ‘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’을 포함
-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~제17조)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 권장 및

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8조)

- 병원 전(前) 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0조)
- 응급의료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1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함.

이번 조례안은 임의규정이 아닌 훈시규정(~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)으로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으므로, 이와 같은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

- 안 제4조는 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함.
- 안 제6조는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, 위원회 위원은 ▶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,

▶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, ▶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응급의료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.

-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18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응급처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는 응급의료 필요성 인식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21조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.
- 또한,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추가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, 응급의료 지원사업 등은 충청북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